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39

발의연월일: 2020. 7. 6

발 의 자 : 남인순 · 양이원영 · 권칠승

최종윤・맹성규・윤재갑

이워택 • 인재근 • 김영배

박성준 · 김영호 · 양정숙

김회재 · 강선우 · 윤미향

서동용 · 김경만 의원

(1791)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2019년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0.92명으로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19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2017년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초저출산 현상 지속 및 고령화의 급진전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존립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높으며,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 경제성장률 하락, 사회보장 부담 증가, 지방소멸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이러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전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저출산·고령사회 영향 평가와 저출산·고령사회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저출산·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저출 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 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저출산·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함(안 제4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 나.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출산 · 고령사회 관련 정책이 저출산 극복과 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평가(이하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 · 고령사회 관련 정책의 수립 · 시행에 반영하여야하다.
- ④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생 략)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이
	저출산 극복과 고령사회 대응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
	(이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
	<u>과를 저출산·고령사회 관련</u>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
	<u>야 한다.</u>
	④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지원) (생 략)	제32조(지원)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
	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u>있다.</u>